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농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 대상	가축의 종류 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농장소재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번호	
	사육시설	사육규모	
	동	m ²	

「동물보호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1부	수수료 제56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증 2.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증	

[동의]

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동물보호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홍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의 사본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